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

| 일시 | 2017. 9. 25.(월) 10:00

| 장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PROGRAM

시 간		내 용
10:00-10:10	10'	개 회
		발 제
10:10-10:40	30'	-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좌장 :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10:40-11:55	75'	1.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장 3.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4. 안성희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5.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11:55-12:25	30'	종합토론
12:25-12:30	5'	폐 회

-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개최 현황

구분	날짜	주제
1차	2017. 6. 27.(화)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활 지원 방안 모색
2차	2017. 7. 24.(월)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지원시설 협업 발전방안
3차	2017. 8. 28.(월)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범죄 사법절차 개선방안 모색



CONTENTS

발제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제도화 방향 57

1.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59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장 66

3.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70

4. **안성희**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76

5.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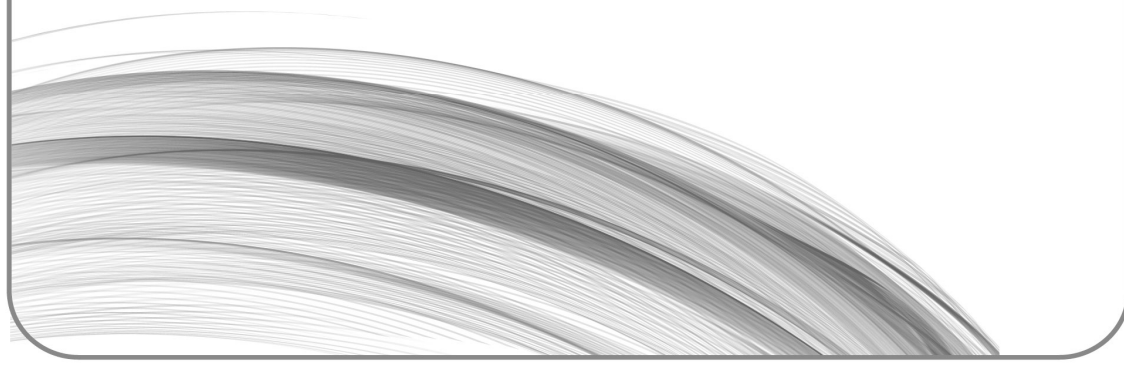


발제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¹⁾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연인 간,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범죄는 친밀한(했던)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이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 되기 쉽다. 여기에 어렵게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은 연인 간이거나 이전 동거 등을 한 경우에는 남녀 간 사생활 영역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최악으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2016년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8,367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그 중 449명이 구속되었다. 100여건에 이르는 살인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고, 폭행과 강간, 강제추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은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토킹 피해자 중 그 피해가 3회 이상인 경우는 44.8%, 1회 30.6%, 2회 24.6% 순으로 2회 이상 피해자가 69.4%로 그 피해가 1회에 그친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아는 사람이 82.3%, 모르는 사람이 18.8%였다. 피해유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65.6%),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있음’(47.3%),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SNS포함)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43.3%)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2012년 3월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아래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피해가 발생한

1) 이 발표문은 박선영·황정임·송지선·김현아·김정혜(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후에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처벌이 가벼워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 강력한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도 안고 있다. 스토킹·데이트폭력이 형법상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주거침입(제317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법을 집행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스토킹은 여성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보호 체계 마련과 함께 20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젠더폭력 근절)를 100대 국정과제 포함시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데이트폭력·스토킹 현황 및 특징과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후에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2. 데이트폭력·스토킹 현황 및 특징

가. 데이트폭력 현황 및 특징

1)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과 특징

연인 간 폭력은 상해, 살인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경찰 접수 데이트폭력 사건은 거의 매년 7000건대를 유지해 왔으며, 경찰청의 2017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8,367건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폭력 유형 중 100여건이 살인이라는 것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표1〉 참조).

〈표1〉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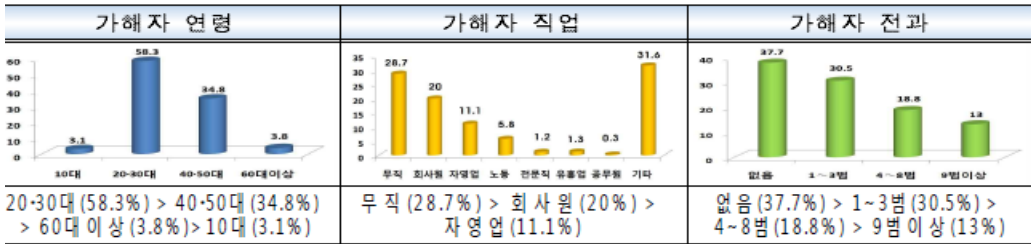
연도별	계	상해	폭행	폭처법위반	살인	강간·강제추행
2011년	7,292	3,074	2,633	1,068	127	390
2012년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2016년	8,367	-	-	-	-	-

자료: 경찰청 브리핑 2017. 02. 03.(수)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남녀 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2016년 경우는 '17.03.03 경찰청 브리핑 자료로 2016년부터의 통계 집계계의 변동으로 세부 통계는 확인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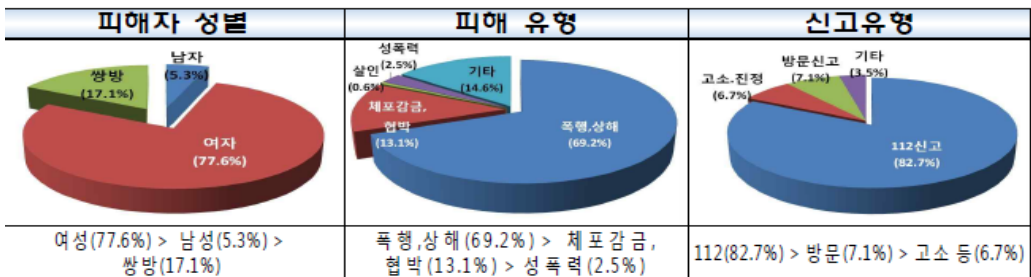
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해자는 연령별로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고 40~50대도 34.8%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회사원(20%), 자영업(11.1%)도 많았으나 무직자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7.6%로 대부분이나 남성도 5.3%를 차지(나머지 17.1%는 쌍방)하였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9.2%), 체포·감금·협박(13.1%), 성폭력(2.5%), 살인(미수 포함, 5.6%) 순이다.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2)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본 데이트폭력 발생현황 및 특징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9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바 있다. 온라인 조사결과, 데이트 관계에서 일정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1.6%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응답자 1,082명 가운데 여성응답자수 1,017명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로, 62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2〉 여성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2016년	
		비율	여성 응답수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피해(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중 한 종류라도 피해경험 있음	61.6	(626)
	폭력피해(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네 종류 모두 피해경험 있음	11.5	(118)
분석대상자수		-	(1,017)

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60세 성인(데이트 관계 경험자)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페이스북 활용)
 - 조사기간: 2016. 9. 12.~9. 21.(10일)

2) 설문응답자 중 93.9%(1,017명)가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응답수의 차이가 커, 유의미한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어 여성 응답수만 분석하여 제시

출처: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신고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8%에 불과했으며,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53.3%),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33.3%), 합의를 종용하는(10%) 모습을 보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표3〉 경찰신고 유무 및 신고 후 경찰 사건처리 방식

(단위: %, 명/중복응답)

경찰신고 유무		2016년	
		비율	응답수
있다		4.8	30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53.3	16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40.0	12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33.3	10
	합의를 종용했다	10.0	3
	고소하라고만 했다	10.0	3
	기타	36.7	11
없다		95.2	597
계		100	627

출처: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영호 외(2015)의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의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으로는 〈표4〉와 같이 통제와 심리적·정서적 폭력피해, 성추행, 성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데이트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단위: 명, (%)/중복응답)

구분	응답수
통제	1,519 (76.0)
심리적·정서적 폭력 피해	703 (35.2)
신체적 폭력 피해	387 (19.4)
성추행 피해	710 (35.5)
성폭력 피해	406 (20.3)
상해 피해	135 (6.8)
계	2,000 (100.0)

출처: 홍영호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59.

계속해서 연인대상 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이력이 있는 이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대상 폭력범죄를 행한 이들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76.6%로 전과가 없는 23.3%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폭력의 가해자였던 이들이 다시 동일한 유형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인대상 범죄자의 특성은 데이트폭력·스토킹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5〉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단위: 명, %)

구분	2005년~2014년 누계	
없음	16,666	23.3
1범	9,973	13.9
2범	7,730	10.8
3범	6,378	8.9
4범	5,130	7.2
5범	4,302	6
6범	3,386	4.7
7범	2,853	4
8범	2,336	3.3
9범	12,665	17.7
미상	107	0.1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0. 재인용.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는 폭력의 유형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데이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편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지칭한다.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뒤얽히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폭력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²⁾ 또한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며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³⁾

2) 배수희·손승영(2015),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 p.95.

3) 장민선(2015), “데이트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제9권, p.1.

나. 스토킹 현황 및 특징

1) 경범죄 처벌법처리현황을 통해 본 스토킹 발생 현황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검거된 사례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33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해마다 약 300여건을 상회하였다.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의 검거수가 3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표6〉 참조).

〈표6〉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명, %)

기간	발생		검거		검거(계) (명)	검거(계)(명)			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남	여	미상	
2013년	312	-	312	100	312	-	-	-	312
2014년	297	-	297	100	297	-	-	-	297
2015년	363	-	363	100	363	-	-	-	363
2016년 1~7월	336	-	336	100	336	-	-	-	336

출처: 정춘숙 의원실, 2016년 8월12일자 경찰청 답변 내용;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0 재인용.

「경범죄처벌법」은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7〉 참조).

〈표7〉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처벌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훈계방면		0	0	0	0
즉결심판청구		58	48	62	94
즉결 심판 결과	청구기각	6	6	10	5
	무죄	0	0	0	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선고유예·형 면제	3	2	7	9	
	구류	2	3	0	0	
	벌금	건수	43	36	44	79
		금액 (건별 평균금액)	5,410 (126)	3,680 (102)	4,530 (103)	5,055 (64)
	과료	건수	2	0	0	1
		금액	70	0	0	40
정식재판청구		2	1	1	0	
범칙금 부과	건수	254	249	301	242	
	금액 (건별 평균금액)	20,320 (80)	19,920 (80)	24,080 (80)	19,360 (80)	

출처: 정춘숙 의원실, 2016년 8월12일자 경찰청 답변 내용;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재인용.

2)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로 본 스토킹 발생현황 및 특징4)

한국여성의전화가 스토킹을 따로 범주화하여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로 2014년까지 10년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사례수의 누계는 998건이고, 전체 성폭력상담의 19.1%를 스토킹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제추행, 강간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표8〉 참조).

〈표8〉 2005년~2014년 스토킹 상담 사례수5)

(단위: 건수,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39	110	92	125	86	
(비율)	(9.0)	(23.6)	(19.1)	(26.4)	(21.1)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건수	90	128	90	138	100	998
(비율)	(16.6)	(26.2)	(15.9)	(15.6)	(17.5)	(19.1)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재인용.

4) 이하의 내용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상담통계는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5) 2005년~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다음은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스토킹 사례수이다. 2015년부터는 한국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상담이 이전 10년 누계 평균 19.1%였던 것에서 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에는 다시 총 상담건수에서 스토킹상담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들어 ‘안전이별’,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 역시, 강제추행, 강간 다음으로 스토킹 상담 사례수가 많았다(〈표9〉 참조).⁶⁾

〈표9〉 2015년~2016년 상반기 스토킹 상담 사례수⁷⁾

(단위: 건수, %)

연도	2015	2016.1~6.	누계
건수	162	141	303
(비율)	(9.0)	(14)	(11.5)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 (2016.8.25.) 재인용.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반기 스토킹 상담 사례사례(141건(14.0%))를 통해 본 스토킹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141건의 성별을 살펴보면 98.6%인 139명이 여성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스토킹 피·가해자 성별

(단위: 명)

구분	피해자			
	여성	남성	계	
가해자	여성	1	2	3
	남성	138	0	138
	계	139	2	141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 (2016.8.25.) 재인용.

6)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2015년 상담통계를 보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5년 총 성폭력상담건수 1,308건 중 스토킹 상담이 58건으로 전체 성폭력상담의 4.4%를 차지하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전체 상담 639건 중 80건으로 12.5%가 스토킹 상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7) 2015년~2016년 상반기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한국여성의전화

둘째, 스토킹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상담통계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애인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전)배우자 7.9%⁸⁾, 직장관계자 7.5%,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과 미파악된 건수를 제하면 스토킹 가해자의 평균 97%는 아는 사람이었다. ⁹⁾ 이는 스토킹 행위가 친밀한 관계나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표11〉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2013년~2016년 상반기)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월		누계	
계	138		178		162		141		619	
친(의·양)부모, 친인척	2	1.4	4	2.2	6	3.7	2	1.4	14	2.3
(전)배우자	1	0.7	22	12.4	19	11.8	7	5	49	7.9
(전)애인	101	73.2	118	66.3	98	60.5	111	78.7	428	69.1
직장 관계자	12	8.7	8	4.5	16	9.9	11	7.8	47	7.5
동급생선후배	1	0.7	6	3.4	1	0.6	1	0.7	9	1.5
서비스 제공자	2	1.4	0	0	2	1.2	1	0.7	5	0.8
채팅 상대자	4	2.9	0	0	2	1.2	5	3.5	11	1.8
동네 사람	4	2.9	1	0.6	4	2.5	1	0.7	10	1.6
단순 대면인	4	2.9	2	1.1	2	1.2	0	0	8	1.3
모르는 사람	6	4.3	3	1.7	3	1.9	0	0	12	1.9
미파악	1	0.7	4	2.2	2	1.2	0	0	7	1.1
기타	-		10	5.6	7	4.3	2	1.4	19	3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 (2016.8.25.) 재인용.

스토킹 상담 141사례 중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가해 유형은 아래와 같다.

8) 본 상담통계는 내담자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주된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피해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명명조차 할 수 없기도 하다.

9)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집계한 상담통계와도 거의 비슷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토킹 상담 중 93.8%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를 입었고, 56.7%는 (전)데이트 관계의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 일반인 조사여서 조사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는 관계가 약 60%, 헤어진 애인이 32%로 조사되어 일반적으로도 스토킹은 아는 관계에서,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스토킹 가해 유형

(단위: 건, %/중복응답)

스토킹 가해 유형		2016년 상반기	
		건수	비율
정서적 폭력	소계	424	100.0
	폭언, 멸시, 욕설	53	12.5
	협박	84	19.8
	통제, 고립	17	4.0
	감시·미행·반복적 연락 등	136	32.1
	명예훼손	9	2.1
	자해·자살협박 및 시도	26	6.1
경제적 폭력	소계	20	100.0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3	15.0
	갈취	6	30.0
	낭비, 채무(빚)	3	15.0
	지불 강요(데이트비용청구 등)	8	40.0
성적 폭력	소계	75	100.0
	강간	9	12.0
	유사강간	0	0.0
	성추행	8	10.7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5	33.3
	통신매체 이용 음란	6	8.0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1	1.3
	성적모욕·비난	6	8.0
	성적의심(의처증)	4	5.3
	성관계 강요	12	16.0
	변태적 성행위	1	1.3
	미파악	1	1.3
	기타	2	2.7
신체적 폭력	소계	110	100.0
	손발로 구타	28	25.5
	목조름	12	10.9
	흉기로 위협	7	6.4
	흉기로 상해	2	1.8
	물건 던짐	15	13.6
	당기거나 밀침	17	15.5
	침입	6	5.5
	납치	1	0.9
	감금	6	5.5
	힘으로 제압	14	12.7
	잡 못 자게하기	1	0.9
	기타	1	0.9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 (2016.8.25.) 재인용.

스토킹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유형으로는 심리적 피해, 사회적 피해, 신체적 피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스톱킹 피해자들은 우울감,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대인관계 기피하게 되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적 건강과 생명이 훼손되거나 위협받기도 했다.

〈표13〉 스톱킹 피해 유형

(단위: 건, %/중복응답)

스토킹 피해 유형		2016년 상반기	
		건수	비율
심리적 피해	소계	160	100.0
	우울감·무기력	28	17.5
	불안감	68	42.5
	공포·두려움	64	40.0
사회적 피해	소계	28	100.0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	6	21.4
	학교·직장등생활의 어려움·중단	21	75.0
	기타	1	3.6
신체적 피해	소계	19	100.0
	사망	1	5.3
	상해	10	52.6
	질병·장애	2	10.5
	임신	2	10.5
	유산	0	0.0
	낙태	4	21.1

출처: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톱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톱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 (2016.8.25.) 재인용.

3. 데이트폭력·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데이트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서 데이트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왔다.¹⁰⁾ 이러한 일환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 적용해오던 ‘보호명령(Protection Order)’ 제도를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면서

10) 장민선(2015), 위 논문, p.3.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왔다.¹¹⁾

보호명령제도는 1970년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 콜롬비아 특별구에서「가족범죄법」을 제정하면서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76년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1980년대까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다.¹²⁾ 그런데 이러한 보호명령제도가 점차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적이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시 보호명령권을 발동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데이트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이다.¹³⁾ 미국 내에서 보호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각 주의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데이트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보호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법안 자체에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¹⁴⁾

미국에서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Protection Orders), 스토킹/괴롭힘 보호명령(Stalking/Harassment Protection Orders), 성폭행피해자 보호명령(Sexual Assault Victim Protection Orders)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가정폭력보호처분은 가족구성원, 동거인, 데이트 관계 등 가족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 내에 있고, 실제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

가) 메사추세츠주

미국의 메사추세츠주는 2010년 보호처분의 적용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했는데, 메사추세츠의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관계가 아닌 일반 성폭력범죄에 모두 적용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폭력이나 학대 위협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법원은 가해자의 참석 없이도 피해자에게 ‘임시 보호명령’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보호명령’ 처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10일 이내에 법정 심리를 열어야하고, 가해자는 법정 심리에서 진술한 기회를 제공받아야한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보호명령은 1년까지 지속될 수

11) 류병관(2014),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p.93.

12) 류병관(2014), 위 논문, pp.93-94.

13) 류병관(2014), 위 논문, p.96.

14) 류병관(2014), 위 논문, pp.96-97.

15) 류병관(2014), 위 논문, pp.93-94.

있다. 명령이 끝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하고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다시 고민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가정폭력보호명령은 민사적 성격을 갖는 처분이지만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정 모독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보호명령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¹⁶⁾

나) 텍사스주

텍사스주의 경우 2001년 가정폭력의 개념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¹⁷⁾ §71.0021(a)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를 유지해왔거나 결혼을 앞두고 관계에서 신체적 위협,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로 정의된다.

텍사스주는 데이트폭력의 피해나 가해가 심각한 경우 「형법」 §22.01(a)항, 22.02(a)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데이트 파트너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¹⁸⁾

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족법」 §6210에서 데이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란 금전과 무관하게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기대하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결합”을 의미한다.

라) 미주리주

「미주리주법」(Missouri Revised Statutes)은 §455.010에서 폭력 행위의 개념, 폭력 행위의 구체적 양태,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폭력 행위에는 스토킹 행위, 애인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16) 메사추세츠의 보호명령제도에 대해서는 류병관(2014)의 논문을 참고로 정리함.

17) “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참고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link=FA>)

18) 류병관(2014), 위 논문, p.96.

마) 아리조나주

아리조나주는 미국의 주 가운데 살인죄 발생율이 매우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데이트폭력을 포함하는 가정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는데, 2008년 12월 17세의 여성 케이티(Kaity)가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7월 13일「케이티법」(Kaity's Law)이 통과되었다.¹⁹⁾「케이티법」은 기존에 혼인중이거나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을 연인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데이트폭력의 증가에 대응하여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Clare's Law)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Clare Wood)의 사례를 통해 파트너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폭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²⁰⁾ 새로운 파트너에게 이전의 3개의 전과를 알려주는 것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의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완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 정부는 현재의 파트너 혹은 앞으로 파트너가 될 사람의 폭력 전과를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하고자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폭력전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선택권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본 제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정보공개는

19)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360-361.

20) Home Office,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 consultation: Summary of Responses”, March 2012, p.3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57807/consultation-responses.pdf)

기초조사-대면면담-종합위험성 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역의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 위원회 등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²¹⁾

3) 일본

일본은 가정 내의 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1년 「DV(Domestic Violence)방지법」이 시행된 바 있는데, 법의 전문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범죄라는 점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²²⁾ 이 법은 제정 이후 2004, 2007, 2013년 각각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서는 폭력의 유형을 확대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데, 이전에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다루었다면, 개정을 통해 정신적 폭력, 성적관계의 강요로서 성적 폭력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력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제적 폭력, 자녀를 이용한 폭력 등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고려하게 되었다.²³⁾

2차 개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뿐 아니라 협박 행위까지도 보호 명령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가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행위까지도 접근금지의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²⁴⁾

3차 개정에서는 생활의 본거지를 함께 하는 파트너(동거 관계)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상대까지도 포함시켜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²⁵⁾

21) 강용길 외(2016),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pp.195-196.

22) 박용광(2015),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pp.78-79.

23)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24)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25)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나.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외국의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스토킹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국가마다 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의 규율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

〈표 12〉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0	Stalking	「형법」 제646.9조 (a) 의도적, ²⁶⁾ 악의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b)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의도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캐나다	1993	Harassment	「형법」 제264조 타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타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신하는 행위, 타인이 방문, 생활 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둘러싸거나 관찰하는 행위
호주 퀸스랜드주	1993	U n l a w f u l Stalking	「형법」 제359조A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1994	U n l a w f u l Stalking	「형사통합법」 제19조AA(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19AA) (a) 적어도 2회 이상 분리되어 행해진,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b)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나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유발할 의도를 가진 행위
호주 빅토리아주	1995	Stalking	「형법」 제21조A(Crime Act 1958 s21A)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자 그 밖의 사람에의 안전에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
뉴질랜드	1997	Harassment	Criminal Harassment (Harassment Act 1997 ²⁷⁾) 12개월 내에 2회 이상의 분리된 괴롭힘 행위로 (a)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공포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 (b) 다른 사람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을 아는 것

26) “willfully”: 범의의 종류 중 하나로 ‘willfully’ 개념은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이 규정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Harassment	(a)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b)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아일랜드		Harassment	법령에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한 수단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거나, 침입하거나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
벨기에	1998	Belaging	442의2조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네덜란드	2000	Belaging	285b조 타인에게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수인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체계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몰타 공화국	2005	Stalking	251A조 (a)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되고 (b) 행위자가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일련의 행위 251B 일련의 행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그 또는 그의 재산, 친족등과 그 재산에 대해 폭력이 행사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251C, 251A와 251B의 괴롭힘은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함. ²⁸⁾
오스트리아	2006	Beharrliche Verfolgung	107a조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독일	2007	Nachstellung	제238조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하여 그의 생활형상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1. 그의 주변을 찾아가거나, 2. 전화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와의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3. 그의 개인관련정보를 오·남용하여 그에게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4.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의 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헝가리	2008	Zaklatás	제222조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훈(2003),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p.411 참조.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이탈리아	2009	Atti persecutori	제612의2조 타인에게 반복적인 협박 혹은 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
룩셈부르크	2009	Harcèlement obsessionnel	제442-2조 스토킹 행위로 대상자의 안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
체코공화국	2010	Nebezpečné pronásledování	제354조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폴란드	2011	uporczywe nękanie	제190a조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국가마다 스토킹을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이나 핵심적 요소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위’ 등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회적이거나 지속성을 갖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또 다른 공통점은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이 스토킹을 규정하는데 이러한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개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스토킹의 구체적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주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적이며 범죄라는 점을 자각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법적인 판단이나 법집행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확대시키면서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나 처벌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갖게 한다.

특히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처럼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서 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국과 호주 대부분의 주, 일본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²⁹⁾ 독일 역시

27) 뉴질랜드 Harassment Act 1997 참고(<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28) 몰타공화국 CRIMINAL CODE 참고(<http://www.justiceservices.gov.mt/DownloadDocument.aspx?app=lom&itemid=8574&l=1>)

29)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네 가지의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12년 개정 전까지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법률에 ‘괴롭힘(Harassment)’의 구체적 행위 유형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³⁰⁾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해 제2A조와 제4A조를 신설하면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법률에 스토킹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법률이 규율하는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여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 유형의 예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스토키 규제법에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메일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³¹⁾

2)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도 크게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 양분된다.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범죄화하기도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에는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스토킹의 정의나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피해나 피해자보호방안 등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w Review, 34(4), pp.861-863쪽에서는 미연방 각 주의 입법형식을 일본의 스토킹 방지법과 함께 열거형(list model)으로 분류하였다.

30) 이 때문에 저자들은 개정 전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을 “일반적 금지형(General Prohibition Model)”으로 분류한 바 있다.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위 논문, pp.863-856.

31) 2013. 7. 3. 개정으로 원치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3)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까지도 고려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거동범(舉動犯)은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스토킹의 경우 이러한 거동범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는 스토킹을 범죄로 구성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를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피해나 침해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서 금지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³²⁾

미국의 많은 주들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력의 위협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살인이나 중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Reasonable Fear of Death or Grave Bodily Injury)’”까지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의 결과로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스토킹 판단 시에 주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의 모범법전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람을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에 처하게 하고 스토커가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그러한 두려움에 처하게 했던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함으로써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스토킹 행위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영국과 헝가리, 몰타 공화국의 스토킹 규제법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결과의 발생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중죄(Felony)로 여겨진다.

32) Paul E. Mullen et al.(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50.

4)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각국의 입법례는 행위자의 고의성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스토킹 행위 규정과 처벌을 논하는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스토킹의 가해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에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일정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사실은 형사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한다.

미국 29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역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서 구성하는데, 행위자의 의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특정한 목적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데 행위자를 의지적 요소를 스토킹 행위 그 자체와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 몰타, 아일랜드는 ‘알 수 있었던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의 과실여부까지도 고려하여 과실범까지 처벌한다. 이러한 영국, 몰타, 아일랜드와 같은 사례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한국의 일반적 범죄체계에서는 그 시사점이나 유용성을 판단하거나 적용할 때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독일 등은 행위자의 고의의 정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친고죄 여부

각국의 입법례는 죄를 처벌하거나 기소의 필요조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의 경우는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로 간주되는데, 다만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의 형태를 띤다. 소추가 필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로는 범인이 문제되는 사안의 피해자 외의 타인에 대한 스토킹

33) 여성부(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p.102.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³⁴⁾ 제2항 또는 제3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역시 고소에 의한 기소와 직권에 의한 기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 경고를 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가 이 경고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 없이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토킹 범죄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6년 107조의a(Beharrliche Verfolgung)를 신설(2006년 7월 1일)하면서 스토킹을 입법화하였을 당시에는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양태의 스토킹에 한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였으나 2007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다.

6) 형량의 범위

스토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은 법정최고형이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죄로, 법정최고형이 1년 이하 6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죄로 구분한다. 14개 주는 초범까지도 중죄로 별하며, 35개주에서는 재범 또는 가중구성요건을 중죄로 정하였다. 가중사유는 법원의 명령, 보호관찰·가석방 조건 위반, 휴기휴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피해자가 이전의 범죄와 동일한 경우 등이다. 메릴랜드 주만이 모든 스토킹 범죄를 경죄로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7) 피해자의 보호

스토킹에 대한 ‘three P’라고 불리는 인권 관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소(Prosecution), 즉 범죄화뿐만 아니라 지원(Provisions of Support)과 보호책(Protection) 포괄한다.

34) 김성룡(2007), “독일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pp.149-150.

가) 미국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경찰작용과 형사사법적 경찰조치가 구분되지 않는 영미법계의 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의 경우도 형법에서 규율된 경우가 많다.³⁵⁾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6.91조(a)항은 판사 등 사법관(Judicial Officer)은 경찰관(Peace Officer)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스토킹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을 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긴급보호의 연장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보호명령은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혐의만으로도 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³⁶⁾

나) 호주

호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 이외에 거의 예외없이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본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되었던 보호명령제도가 스토킹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빅토리아주의 보호명령제도를 예로 들자면, 당초 보호명령 기간 12개월의 기간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그 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였으며,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자유형과 2,400달러 이하의 벌금 가운데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과 할 수 있고, 이후 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령을 내리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할 수도 있다.³⁷⁾

다) 영국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스토킹을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형사법원에서 접근금지의 민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입법적 규율 외에도 영국 내무부와 런던경찰은 스토킹 사례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안내자료³⁹⁾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⁴⁰⁾

35) 이성용(2012),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p.71-72.

36)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2.

37) 이기현(2002),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pp.346-347.

38)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4.

라) 아일랜드

아일랜드 법원 또한 형사처벌에 부가하여 또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거나 직장주변 일정범위의 접근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⁴¹⁾

마) 일본

일본의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협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4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행정청은 그 행위의 반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구하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복의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또는 명예훼손이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가해자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명령은 15일까지 유효하며(제3항), 공안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의견청취를 하고 금지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5항).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고려하여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등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5조).

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사집행법」 제382b조는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나 이에 대한 위협,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의 동거를 수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에 대하여 주거와 주변지역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더하여 체류와 접촉 역시 금지할 수 있다.⁴²⁾

39) Metropolitan Police Service(2000), Stalking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An investigator's guide 참고 (<http://www.hamishbrownmbe.com/img/stalking.pdf>).

40)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5.

41)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10(3).

「형법」 제107a조의 개정과 함께 스토킹 대응을 위해 새로이 삽입된 「민사집행법」 제382g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지관계에 있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한시적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접촉이나 따라다니기, 특정지역에의 체류, 개인정보나 사진의 전달이나 배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재화나 용역의 주문, 제3자를 통한 접촉의 사주 등의 금지가 해당한다. 제2항에서는 법원이 경찰관청에 한시적 금지조치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장 3년간 가능하며 체류금지를 제외하고는 본안심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⁴³⁾

사) 독일

독일에서는 각 주의 경찰작용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게 스토킹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방지라는 보호법익에 근거하여 범죄의 발생이전 단계에서 주경찰법상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⁴⁾

주경찰법 제34조제1항은 경찰이 위협방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체류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기하고 있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경찰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예견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과 동시에 퇴거가 발해진 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⁴⁵⁾

4.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 하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기타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기보다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 형법 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능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과 연관성이 높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범죄피해자 보호

42)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110.

43)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109-110.

44)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84-86.

45)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88-90.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보호, 지원 방안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1) 지원 현황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각 법률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제7조).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에는 일시보호시설에 피신할 수 있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할 때에는 상담소는 신고제, 보호시설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제5조),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소는 ① 가정폭력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대응, ② 가정폭력 신고 또는 상담 요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의 인도, ④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⑤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홍보, ⑦ 기타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6개월 내의 기간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년 내의 기간으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등을 보호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제7조의2).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시설은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 타 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⑧ 기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타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의료비를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7조의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제14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여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때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지원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 친족을 말한다. 동거 친족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상담소는 신고제, 보호시설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0조),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상담소는 ① 성폭력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② 성폭력 보호시설 연계, ③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④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의 동행, ⑤ 사법 절차에 관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⑦ 기타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제11조).

보호시설에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제12조).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은 1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그 외의 보호시설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다(제16조). 보호시설은 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피해자등의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⑤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의 동행, ⑥ 사법 절차에 관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⑦ 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⑧ 기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자가 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범위를 제외하고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기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성폭력이 수반된다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심리,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사법 절차 지원, 자립지원, 보호시설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특정범죄⁴⁶⁾에 해당하는 경우의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이나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하 ‘범죄신고 등’)을 한 사람(이하 ‘범죄신고자 등’)은 사건의 조사 및 재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기타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제7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였다면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검사가 관리하게 된다. 범죄신고자 등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원관리카드는 제한될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이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신고자 등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신고자법」 상 범죄신고자 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판사는 소환된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11조). 이 경우 판사는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 「범죄신고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 고소, 고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범죄신고자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복 우려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제23조).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신원관리카드의 기재 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보복 우려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신고자법」의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건의 조사 및 재판에서 인적 사항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다)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또는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말한다.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때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도 가능하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는 ①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②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③ 기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 피해자 구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성폭력방지법」 제31조). 만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하여 경찰의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다(제5조).

응급조치의 내용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급조치는 특히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수반하는 스토킹에 유의미하다. 별거중인 배우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스토킹이 발생하고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며, 재발 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 치료보호의 내용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말하며, 치료보호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비를 지급한 뒤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보호 또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가정폭력인 때라야 가능하다.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7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친지,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지원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8조). 따라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성폭력이 수반된 경우, 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의2).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성폭력과 관련된 때에는 대상자 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법률구조가 가능하다.

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피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에서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측의 신청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한다(제259조의2). 통지 내용은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이다.

「범죄신고자법」은 보복 우려에 따른 통지를 규정한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주요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5조). 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며, 통지의 대상도 같다. 통지 내용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 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 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정보 제공 규정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해당되므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범죄신고자법」의 통지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동법의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에 해당되어야 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다(제8조의2).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정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권,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 기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피해자는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성폭력 이외의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성폭력범죄 전담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은 성폭력 범죄 전담관 또는 전담부를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을 조사, 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한다(제26조). 국가는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제28조). 전담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또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사 및 재판에서 성폭력범죄 전담부로 배당될 수 있을 것이나, 성폭력과 무관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 증인지원시설

각급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둔다(제32조). 증인지원시설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증인지원관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지원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각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이외의 증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폭력을 수반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성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경우는 각 법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인지원시설의 이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 신뢰관계인 동석

모든 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제3항). 범죄가 성폭력범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법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는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 검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성폭력이 수반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진술을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법원은 증인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을 할 수 있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화상증언실 등 법정 외의 장소에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하여 증언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은 피해자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이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제165조의2).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제40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또한 해당 사건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범죄의 성질상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때 심리적인 부담으로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하여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비공개 심리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도 비공개 심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으로 소환 받는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제31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증인으로 소환 받는 때에는 사생활 보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제32조).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법원에 증인 신문 of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판이나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그 가족 또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 심리, 재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조사, 심리, 재판의 횡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조사, 심리,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적용된다.

■ 소송진행의 협의

「범죄신고자법」이 적용되는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법」의 위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복 우려를 요하지는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가 가능하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역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소송진행의 협의가 가능하며,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소송진행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아) 생활지원

■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거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이다(「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4조의2).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하였다가 퇴소하였다면 요건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취학 및 취업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의 보호,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취학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고용상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법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성폭력방지법」 제8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5). 이 규정 또한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하고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각 법률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가정폭력방지법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2) 문제점

현행법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고 그 이외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강간 등 형법 및 기타 특별 형법에서 범죄에 해당되거나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때 그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피해자 역시 해당 행위가 현행법 중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겠으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고, 성폭력을 수반한다면 「성폭력방지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행위 유형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행위들이 단일한 법이 아닌 여러 법에 걸쳐져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호·지원 역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살펴본다.

첫째, 보호시설을 생각해 보면,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일시적인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좀 더 긴 기간이나 밀착적인 보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부족할 것이며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각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때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성폭력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어 해당 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현재의 보호시설도 넉넉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호시설의 주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스토킹 및 데이트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피해자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크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추가 피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학, 이직, 이사, 개명 등을 하였을 경우 변경된 이후의 정보는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려면 스토킹 행위 중에 「범죄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외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보호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스토킹이 현재와 같이 경범죄로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셋째, 가해자의 정보 제공 문제이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접근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그 범위가 좁고, 스토킹에서 우려되는 지속적인 접근의 반복은 「범죄신고자법」의 통지 요건인 ‘보복 우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

넷째,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스토킹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피해자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가 재발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당시의 문제가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담당 경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다섯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으며, 증언 시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화상증언,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 비공개심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이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과 같이 단일한 하나의 행위로 완결되는 범죄가 아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법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이 다른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여러 행위의 합산으로 구성되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개별 법률에 따라 나누어 판단하게 되면 각각은 심각하지 않게 보여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법률에 따른 지원의 특성 상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행해질 수 있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국에는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1)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가는 필요한 지원 규모와 예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활용하면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에 대한 특별법안들을 살펴보면, 남인순 의원안⁴⁷⁾, 정춘숙 의원안⁴⁸⁾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김제남 의원안⁴⁹⁾은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에서 예상되는 피해자 수가 적어 기존의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 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김삼화 의원안⁵⁰⁾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스토킹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규정하였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 표창원의원안⁵¹⁾도 데이트폭력·스토킹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상담소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여성폭력과 연관성이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적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만이 아니라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지원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가정구성원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성폭력을 수반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단지 개인적 집착이나 병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여성폭력으로서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7)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2차례에 걸쳐 스토킹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여기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남인순 의원안'이라고만 한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913972, 제안일 2015.2.1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000102, 제안일 2016.6.3.

48)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02537, 제안일 2016.9.30.

49)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05532, 제안일 2013.6.19.

50)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002641, 제안일 2016.10.13.

51)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429, 제안일 2017.8.8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무관한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은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도 부족하여 입소를 원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이 많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는 2014년 총 297건⁵²⁾으로, 사건 수가 적어 보인다. 그런데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토킹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고, 스토킹에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수반되었다면 피해자가 지속적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아 사건 수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속적 괴롭힘은 처벌의 수준이 8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불과하여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기관이 설치되면 스토킹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스토킹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성격이 다른 각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게 되면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안 마련을 위한 경험의 축적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앙센터를 한 곳이라도 설치하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지원 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며, 다른 지원 시설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례를 집적하여 향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52) 국회예산정책처(20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3) 수도권 거주 16~59세 남녀 1,200명을 조사한 박철현 외(2000)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스토킹 피해 경험은 남성 4.2%, 여성 6.6%에 달하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연간 스토킹 피해 인원수를 추산하면 약 175만 명이 된다. 박철현·이상용·진수명(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만하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관련 정책의 마련 등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2)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의 정보, 가족 관련 사항 등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스토킹이 더욱 확대되고 후속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행위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범죄신고자법」의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준용하고 보복 우려 요건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이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정춘숙 의원안이 「범죄신고자법」의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준용하면서 보복 우려 요건을 적용 제외하였고, 김삼화 의원안은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조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스토킹 특별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범죄신고자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허가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신고자법」 제9조제1항은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외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라는 데 본질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열람 허용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보복 우려를 배제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승낙, 위험성 평가 등 별도의 열람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4)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염동연의원안에서 스토킹피해센터의 설치가 제안되었던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스토킹피해센터를 설치하고 스토킹 수사를 전담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심리상담사를 두도록 하였다.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73472, 제안일 2005.11.28.

3) 신변안전조치

데이트폭력과 스톱킹 신고 후의 응급조치만으로는 대상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신변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스톱킹은 1회로 중단되지 않는 행위의 속성상 스톱킹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톱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신고자만을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신고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신변안전조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발의된 의원안 중 정춘숙 의원안에서 총 7가지의 조치 종류⁵⁵⁾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고 그 외의 법안들도 대체로 4~5가지 정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나열하면 스톱킹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좀더 유의하여야 할 조치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열되어 있는 조치들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변안전조치는 스톱킹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별 유형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대신 경찰에서는 향후 스톱킹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변안전조치를 실무상 적절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데이트폭력 및 스톱킹 규제는 행위자의 지속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피해자는 신고 이후 스톱킹 행위자로부터의 안전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과 스톱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여부, 재판의 결과, 출소 등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55) 정춘숙 의원안에서 제시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시간대·동선·횡수 등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4.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별로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5.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6.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직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7. 그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필요한 경우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른 통지는 범위가 협소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하지 말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통지 내용을 알리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측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5)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증언할 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로서 신뢰관계인 동석, 화상증언,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 비공개심리, 피고인등의 퇴장,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소송진행의 협의 등은 스토킹 피해자 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원활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특성상, 피의자, 피고인과의 대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등에게 이상과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스토킹 피해는 직장 내의 관계에서 성희롱이나 일방적인 구애와 연계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상급자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직장 외의 관계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무에 방해를 주거나 직장 동료 또는 고객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스토킹 그 자체로 인하여 또는 스토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스토킹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반 시의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5.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가. 형법 개정

앞서 외국 입법례에서 본 것처럼 독일은 「형법」 제238조에서 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형법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형법에 규정한다면 형법 각칙의 ‘협박의 장’에 스토킹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⁵⁶⁾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 속에서 형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적절한 범죄대응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제·개정이 용이한 형사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취하여 왔다. 이 때문에 특별법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기본법인 형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에 의한 대응은 그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안요소와 위험요소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이 있다.⁵⁷⁾ 따라서 형사 특별법의 난립을 막고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형법에 다양한 스토킹의 행위 유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형법에 규정된다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으며, 증언 시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공개심리 등의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을 형법에 함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토킹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으로 이원화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형법 각칙상의 규정들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56) 의안번호 1914186, 안효대의원 등 30인 발의, 제안일 2015.03.06.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0장의 제목 “脅迫의罪”를 “협박의 죄 등”으로 한다.

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4조의2(지속적 괴롭힘) 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변에 접근하거나 또는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2.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85조 중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를 “제283조제1항, 제2항, 제284조 또는 제284조의2”로 한다.

제286조 중 “前3條”를 “제283조, 제284조 및 제285조”로 한다.

57) 탁희성 외(2011),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p. 421.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없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추가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규정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어 개정된다면,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형사법과 달리, ‘가정의 유지’라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이러한 가정폭력에 준하는 범죄로 해석된다면,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추가하여 ‘가정’이라는 범주에 넣고 보호처분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처벌의 입법목적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한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내에서 보호처분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개정 방식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즉 성폭력을 수반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에 ‘스토킹’의 행위태양을 규율하기 어렵다. 스토킹의 전형적인 한 예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유형은 배우자 스토킹, 애정추구형 스토킹, 망상형 스토킹⁵⁸⁾ 등으로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중 정신적인 집착이나 망상으로 인한 스토킹 행위는 성폭력에 포섭되기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유형과 정합성이 없으며, 스토킹 행위를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이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거나 성폭력의 전단계라는 인식보다,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들에서 포괄되지 않았던 피해상황이나 범죄행위를 여성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특별법 제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 방식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제안하였다.

법의 규율 방식은 피해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징인 형사특별법의 난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58)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5(14), pp.209-222.

지적되어왔다. 형법전의 규범력 약화 및 형법전의 형해화(形骸化),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서 보이는 법적용의 혼란과 같은 형법체계의 혼란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형사특별법의 형법에의 흡수·편입문제와 편입 후의 정비문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의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데는 특별법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⁵⁹⁾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은 크게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 양분된다.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있다. 특별법 형식을 취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토킹을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보호와 지원방안 등까지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사법적 처벌 외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함께 강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치 마련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박선영 외(2014), 「여성 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27-128.

참고문헌

- 강용길 외(2016),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 곽영길·임유석·송상욱(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 국회예산정책처(20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김성룡(2007), “독일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 김학태(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톱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제2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김한균(2014),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법제화의 전략”,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스톱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자료집 (2014.4.16.).
- 김현아(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남궁석(2015.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남인순의원대표발의 (2015.2.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류병관(2014),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 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경상법학』 제22권 제3호(2014.7.),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선영 외(2013),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 외(2014), 「여성 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톱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 외(201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여성가족부.
- 박용광(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 박철현 외(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희영(2007),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선진상사법률』 제39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 배수희·손승영(2015),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 제26권 제1호.
-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교토여자대학교 공동주최, 한일 심포지엄: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자료집(2016.8.25.).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 여성부(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기현(2002),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 이성용(2012),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이승우(2011),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 이원상(2013), “스토킹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민선(2015),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제9권,
한국법제연구원.
- 장정범·이상철(2014),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난정보학회.
- 조훈(2003),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 최희진(2015),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년
제2차 젠더법 연구포럼 자료집(2015.5.7.).
- 탁희성 외(2011),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전화(2015),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연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34(4),

Paul E. Mullen et al.(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상담통계 각년도.

경찰청 보도자료(2017.02.03)

뉴질랜드 Harassment Act

1997.(<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몰타공화국 CRIMINAL

CODE.(<http://www.justiceservices.gov.mt/DownloadDocument.aspx?app=lo m&itemid=8574&l=1>)

아일랜드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 &group=00001-01000&file=639-653.2>)

미국 캘리포니아주 Civil Stalking

Law.(<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ivil-stalking-laws-by-state/california>)

미국 미시건주 PENAL CODE.([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 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 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

호주 퀸스랜드주 Criminal Code Act 1899.(<https://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C/CriminCode.pdf>)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16.6.2016.(<http://www.legislation.sa.gov.au/LZ/C/A/CRIMINAL%20LAW%20CONSOLIDATION%20ACT%201935/CURRENT/1935.2252.UN.PDF>)

최종접속일: 2016.12.20.

호주 빅토리아주 Crimes Act 1958 Authorised Version incorporating amendments as at 17 September

2014.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95c43dd4eac71a68ca256dde00056e7b/ef535bc564cbfcb1ca257d5700218585!OpenDocument)

독일 형법. (<http://www.jusline.de/index.php?cpid=f92f99b766343e040d46fcd6b03d3ee8&lawid=3&paid=238>)

캐나다 Criminal Code Act current to 2016-12-08 and last amended on 2016-06-17.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64.html>)

벨기에 형법. (http://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pl?language=fr&la=F &table_name=loi&cn=1867060801)

네덜란드 형법. (<http://www.wetboek-online.nl/wet/Sr/285b.html>)

오스트리아 형법.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 & Gesetzesnummer=10002296>)

헝가리 형법.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1200100.TV)

이탈리아 형법. (<http://www.altalex.com/index.php?idnot=36774>)

룩셈부르크 형법. (<http://www.legilux.public.lu/rgl/2009/A/1889/A.html>)

체코 형법. (<http://eagri.cz/public/web/mze/legislativa/ostatni/100304362.html>)

폴란드 형법. (http://statystyka.policja.pl/st/kodeks-karny/przestepstwa-przeciwno-4/63485_Grozba-karalna-art-190.html)

Metropolitan Police Service(2000), "Stalking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An investigator's guide."(<http://www.hamishbrownmbe.com/img/stalking.pdf>).

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link=FA>)

Home Office(2012),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 consultation: Summary of Responses"(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57807/consultation-responses.pdf)

토론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제도화 방향

1.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2. **양수옥**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장
3.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4. **안성희**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5.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손문숙*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제도여건상 고소가 어렵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다”
 “(피해자를) 많이 좋아했나보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잘 헤어져라”
 “이전에 극심하게 신변의 위협을 가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해 줄 수 없다”
 “가해자의 폭력을 막다가 같이 때렸다고 해도 쌍방폭력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냥 합의하시죠”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통신사에 문의하세요” ...
 <2016년 경찰의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2016.2.2.~3.2)’ 접수된 상담 중 피해자가 경찰에게 들은 말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며, 언어적·정서적·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 등을 동반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한 현행법과 지원체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도 부족하고, 실제 상담을 요청해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 일쑤다. 발제문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행법과 여성가족부 정책 상 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기존 법률들에서 포괄되지 않았던 피해상황이나 범죄행위를 여성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발제자의 제언에 깊이 공감하며 데이트폭력 피해의 특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1.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¹⁾

1) 폭력으로 시작하고 형성되는 관계

데이트폭력은 소위 ‘이별범죄’로 주요하게 사건이 보도되며,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나 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이해된다. 상당수의 언론보도는 ‘일방적인’ 이별통보, 연락두절 등을 범행동기로 구성하고, ‘안전이별’이란 말이 등장하며 이별을 ‘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헤어짐이 기점이 되어 갑자기 발생하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부터 관계 안에 폭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를 보

1)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1까지 10일간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처: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면 사귀기 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평균 59.9%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관계 초기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폭력은 사귀기 전부터 사귀기 후 3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52.1%로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발생시기가 빠른 특징을 보였다. 여전히 성에 대한 이중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경험은 데이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종속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적행위의 상당부분이 관계초기 발생하는 현실은 성폭력으로 데이트관계가 시작되고 나아가는 일면을 드러낸다.

사귀기 전부터를 시작으로 관계형성 단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이 관계 안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소위 “한창 좋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는 상대의 성향이나 성격, 태도, 행동양식 정도로 ‘이해’되며, 폭력을 ‘자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는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해하며, 관계중단 시도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2) 통제, 폭력의 근원이자 목표

데이트관계 안에서 통제를 경험한 비율은 61.6%로, 이는 데이트상대의 인간관계나 일정, 옷차림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가 일종의 데이트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다. 폭력의 종국적 목표는 상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구성되는 데이트관계는 이미 폭력이 발생하기 용이한 환경, 구조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실태조사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응답자의 90.1%가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폭력 유형별로도 언어적·정서적·경제적폭력 피해여성의 79.2%, 신체적폭력 피해여성의 87.8%, 성적폭력 피해여성의 77%가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통제와 폭력의 높은 상호연관성을 보였다.

통제는 그 자체로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등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폭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통제의 문제는 비가시화 되기 쉽다. 특히 친밀성은 통제를 가리는 중요한 기제로,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 안에서 통제는 ‘애정과 관심’, ‘걱정’ 등의 언어와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설문조사에서 통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38.9%), “아무렇지 않았다”(35.8%),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32.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반응 역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47.6%),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주었다”(42.3%)가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트관계 안에서 통제는 사랑한다면, 사귀는 사이라면 마땅히 따라야할 행동규율로 규범화되고, 규율을 어겼을 때의 비난과 처벌로써 순응을 이끌어내며 규율을 더욱 강화시키는 모습을 띤다. 또한 여성에 대한 통제는 이분법적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한 ‘여성성’의 수행이라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연결되면서 더욱 비가시화 되는 특성이 있다.

폭력이 통제와 맞닿아 있음을 아는 것은 일상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폭력을 인식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응답자의 61.5%가 사귀기 후 3개월 내에 통제를 처음 경험한 것을 볼 때, 통제를 폭력으로 의미화하고 가시화하는 과정은 관계 초기에 데이트폭력을 인지하고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 중단의 어려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관계 초기에 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응답자 68.5%가 6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것은 폭력 발생 이후에도 관계가 상당기간 유지됨을 추정할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 "(폭력의 정도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주요함을 볼 때, 상대에 대한 감정과 폭력 이후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의 태도 등이 관계중단의 의지와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 직후 상대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분노는 희석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이는 단지 피해 당사자의 폭력의 허용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해서야",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많이 하는 언설처럼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사랑'을 명목으로 은폐되고, 이해받고, 정당화된다. 또한 '사랑'이란 감정과 행위, 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봉합된 '폭력'은 '되도록'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방치된다.

4) 혼자서 해결해야 할 '사적 문제'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여전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애정문제' 쪽으로 사소하고 경미한 것으로 취급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에 따른 반응 및 조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31.5%)에도 대부분 상대가 동료나 선후배에 국한되었다. 그 원인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와 도움을 요청한 상대의 반응에 대한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한 폭력이 아니고, 창피하고,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등 도움 요청을 가로막은 이유들은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전가, 폭력에 대한 과소평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반응들로 일정 부분 부응하는 양상이 띄었다. 도움 요청을 차단하거나 그 시도를 좌절시키는 주변인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반응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폭력 피해 이후 취했던 조치에서 전문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2.0~3.2%이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2~8.5%에 그쳤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되고 심화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신고 역시 법적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차라리 심각하게 맞아서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신체적 폭력조차 신고율이 14%에 그쳐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암수율이 높은 범죄임을 알 수 있다.

3.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발제문 검토 및 제언

1)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를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폭력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안,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데이트폭력을 신고했을 시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여전히 데이트폭력을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폭력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가해자 개인의 심리적/병리적 문제로 축소하고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가'이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여성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양태의 폭력으로서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폭력의 본질이 '관계집착'이 아닌 성차별과 성별 권력관계에 있다는 것, 이는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이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고 받았을 때 이를 분명한 범죄행위로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제지하고, 사건 수사뿐만이 아닌 관계 내 가해자의 위협과 폭력의 지속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를 차단하여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가해자에 대해 교육과 상담으로 면죄부를 주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유명무실한 내용이 아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폭력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 현행법 상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범칙금 8만원 부과라는 매우 미약하여 범죄 행위 제지 및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신고 자체를 망설일 뿐더러 신고한 후에도 가해자가 범칙금 부과 의무 이행 후 멈추지 않는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가 경미하게 처벌되어 오히려 스토킹을 자극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강력한 보복 범행이 발행할 위험이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 중 3개 법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2013년부터 지속해서 제안해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²⁾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스토킹의 현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법률이 제정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³⁾

2)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뒤섞이면서 발생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본인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인지하더라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의 통념과 가해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위협은 상당하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있을 것이 기대되는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대응이 어렵다. 또한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해코지할까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조치들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긴급조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법적 처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고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둘이서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찰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작년 3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가해자를 풀어준 지 사흘 만에 피해여성이 살해되었고, 4월에는 자살협박을 하며 피해여성을 찾아온 가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그쳐 다음날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정책과 실제 집행의 간극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 등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경찰은 출동했을 때 현장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폭력피해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및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 후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수사 종결 후에도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가해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야 경찰신고 등 법적 대응을 결심한다. 이 또한 법적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

3)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촉구 서명하기 >> <https://goo.gl/hfaHWG>

4) 현재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보다는 주기적인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간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일상적으로 가해졌던 수많은 폭력 중에 일부 만이라도 인정이 될 거라는, 적어도 더 이상의 폭력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소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이러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기 일쑤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데이트 관계'였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희석시키는 근거로 작동하며,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근거가 된다. 피해자에게는 '폭력상황에서 왜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가해자와 왜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났는지' 등 '완벽한 타인'에 의한 폭력상황에서의 맥락을 적용하며 피해를 의심한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하며 폭력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 폭력을 막기 위한 압력행사나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 등의 본질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쌍방폭행,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 양형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유발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 "갑작스런 이별통보" 등 가해자가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 폭력과 피해가 중함에도 가중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상담, 신고,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합의 중용 금지, 정당방위적 행위에 대한 제고 등)

스토킹은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직장과 공공장소 등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방식은 직접적인 접근 외에도 제3자를 통해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일어난다. 그리고 피해는 스토킹의 직접적인 상대방 외에도 그 동거인이나 친족,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을 사생활의 침해의 문제나 직접적인 접근행위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하도록 규정하여 주변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관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데이트폭력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잘 만든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실제 현장에서 잘 운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피해자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청이 제시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 또는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을 포함하는 신변보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요청 시 몇몇 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러한 보호조치 및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보조차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많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요청 없이도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내용에 대한 지자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드러내고 대응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 수사기관, 사법기관 내 실무자들의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장조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련된 방안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빈틈없는 피해자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 론 문

양수옥*

1. 들어가며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집착, 스토킹, 감금, 협박, 폭행, 살인, 동의 없는 사진, 동영상 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을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상담 시에 내담자의 태도는 가정폭력 내담자에 비해 굉장히 흥분해 있고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폭행에 대한 공포감과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증거 등이 빈약해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절망감을 느낀다.

경찰의 발표와 같이 형사입건수가 8,367건으로 해마다 7-8천 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3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44.8%, 1회 30.6%, 2회 24.6%로 대부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가정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시초가 데이트폭력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담 이외에 의료적인 부분이나 긴급분리 및 보호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미비하여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장

1) 데이트폭력 단초가 되는 가정폭력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데이트폭력 집단별 가정폭력 경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대 데이트폭력 여성 638명중 14.6%가 가정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이들(7%)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부모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도 데이트폭력 미피해자 집단은 16%였던 것과 달리 28.8% 이르렀다. 데이트폭력 연구자들은 가정폭력이 데이트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라도 “가정폭력방지법”안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2. 데이트폭력·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다. 이러한 보호명령제도가 점차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적인이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이 가정폭력범주에서 데이트폭력을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나 케이티법은 가정폭력 방지법 안에 “연인”을 포함해 신변보호, 영장없는 체포, 총기몰수, 가중처벌 등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클레어법”은 클레어가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살해위협과 경찰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살해되었다. 이에 연인의 폭력전과를 조회하도록 하였다. 물론 전과공개에서 몇 가지 쟁점은 있지만, 미국·영국등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정폭력 범주 안에 데이트폭력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 지원현황

가) 여성긴급전화1366 설치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를 하는 기관으로 여성의 3대 폭력뿐만이 아니라 여성폭력 전반에 걸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거법령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근거 하고 있어서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 입소 등 실질적으로 상담이외에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2017년 9월 15일 발생
 피해: 뇌출혈, 갈비뼈 골절, 성대부위 부상, 자상6군데, 코뼈골절, 폐혈증 증세
 경찰연계로 1366에 긴급구호 하였으나 부상이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 입원치료비 및
 간병비, 보호시설연계의 어려움

나)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주거지원사업이 있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가 각 법률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이용 할 수가 없다. 현재 가정폭력 범주 안에 동거가족, 사실혼은 가정폭력 피해의 판례가 있어서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데이트 폭력이라 함은 동거나 사실혼을 제외한 독립된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폭력일 경우 가정폭력범주 안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에 미국이나 영국등과 같이 가정폭력 안에서 데이트폭력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트폭력 중에 성폭력은 현행 법률 안에서 충분히 지원 할 수가 있다.

▣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일시보호시설은 모텔로서 사실상 가해자로부터 노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현재 긴급피난처에 가기를 꺼려하는 내담자들은 임시보호시설(모텔)에 일시 보호 하고 있다. 병원은 대부분이 응급실에 보호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가해자에게 노출될 염려가 매우 높다. 심리적으로 안정보다는 오히려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 경찰의 데이트폭력 지원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1년 통계로 보더라도 매년 7-8천 건의 데이트폭력이 입건되는 실정이고, 보복범죄와 함께 피해 또한 위중하다. 이에 경찰은 여청계, 수사과, 형사과 등이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지원할 수가 없어 초기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연계를 하고 있고 긴급분리가 필요할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운영하는 임시숙소(모텔)을 이용하고 있다.

4. 결론

오늘 발표자의 발제문에 데이트 폭력의 현황 및 특징에서 보았듯이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우 일상화 되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신고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발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등은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오히려 강력범죄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안에서 데이트폭력을 지원할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긴급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지원 등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뿐만 아니라 등의 여성폭력을 지원 할 수 있는 설립목적이 있으므로 초기 개입 및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지원, 긴급피난처이용, 법률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데이트폭력도 확대 해석하여 지원하게 하여야 한다. 때문에 형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처리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원민경*

1.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법제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어 집행 중인 다른 여성폭력범죄에 비교할 때, 데이트폭력¹⁾·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체계 정비 요구의 역사는 비교적 짧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여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비교적 짧다고 하는 스톱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15대부터 20대까지 20년 동안 12회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안수준으로 남아 있는 상태는,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폭력예방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민과 이해가 많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데이트 폭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단체가 앞장 서서 데이트 폭력이 연인간의 사랑싸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면서 그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2016년경부터는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데이트 폭력 신고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데이트 폭력, 스톱킹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법안마련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신중론이 우세하던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데이트폭력, 스톱킹이 여성폭력의 신종범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체계 마련을 제안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물꼬가 트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원 변호사

1) '데이트폭력'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데이트'라는 용어가 위 범죄를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사랑싸움) 정도로 오인케 하여 해당범죄의 범죄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잘못된 속설이 오랫동안 통용되면서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부부싸움'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돌아간 이후 아내에 대한 중대한 형사범죄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뼈아픈 경험들이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용어가 "사랑싸움"이라는 잘못된 속설하에 통용되지 않도록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이별통보 후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이별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하여

가.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규율 방법에 대하여

- (1) 가정폭력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관계’를 추가하여 위 특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²⁾과 20대 표창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과 같이 가해자 처벌은 현행 법률의 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는 별도 법률의 제정으로 해결하려는 의견으로 나뉜다.
- (2) 표창원 의원은 발의안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제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 상습적으로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에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②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나. 스토킹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의 규율방안에 대하여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것에 비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는 12개의 법률안이 발의될 정도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피해자보호와 스토킹 피해를 초기단계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발제문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형법 각칙의 장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했다. 과거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여왔다.

형사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형사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대응이 사회적인 불안요소와

2)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³⁾이든 입장이다.

그러나, 형법의 각칙에 규정된 범죄 중 유독 여성폭력범죄들이 수 십 년 간 적절한 범죄대응수단이 되지 못하다가, 형사 특별법으로 제정된 후 비로소 실질적인 범죄예방 및 위하력을 갖게 되었던 경험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를 형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는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사처벌 원칙 채택⁴⁾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이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강력한 범죄예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형사사법 기관 중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받는 기관은 주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초기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지속 및 발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이 개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가해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과잉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초기에는 가벼운 정도로 시작된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행위가 증대한 폭력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응급조치의무규정은 더 증대한 법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3) 발제문 29쪽 각주 57)에서 재인용, 탁희성 외 (2011),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p421.

4)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예외 규정을 둔 발의안이 2건 있었다. 다행히도 20대 국회에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들은 스토킹 범죄가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응급조치 내용으로는 데이트 폭력, 스톱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의 분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의 퇴거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령, 피해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3)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의무

다른 범죄 신고자의 경우에도 신변안전은 중요하지만, 스톱킹 범죄의 경우,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다 경미한 형태로 이뤄지던 스톱킹 행위도 형사사법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의 개입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개입이 스톱킹 행위자에게 모욕이나 굴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개입은 최악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폭력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이건호 외 2). 데이트 폭력 역시 동일한 경로로 확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찰은 스톱킹이나 데이트 폭력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다.

(4) 불이익 처우의 금지

스토킹 범죄 행위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인 경우 피해자는 스톱킹 피해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와 별개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스톱킹 범죄 행위자가 외부의 제3자인 경우 역시, 스톱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들의 업무도 방해받는 경우 직장 공용전화에 대한 스톱커 행위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리한 처우가 가해지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 처우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해자보호규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한바, 피해자 보호명령의 종류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형사사법기관 각 단계별로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제를 두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조치 및 신변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7)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담 재판부 제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 운영 측면에서는 여성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범죄이므로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전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8)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스토킹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9) 피해자 지원기관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톱킹 범죄 유형에 따른 방어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톱킹 행위자가 정신질환이나 이상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스톱킹 행위의 초기 단계에서 스톱킹을 당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행위자가 당할 수도 있음을 일깨운다면 정상적인 심리상태의 인간의 경우 그러한 괴롭힘 행위를 그만둘 것으로 보고 있다(이건호 외 2).

그런데, 정신이상 상태의 행위자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가 폭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스톱킹 피해자는 스톱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스스로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없으므로 스톱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스톱킹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예산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스톱킹 피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겠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역시 그 특성에 맞게 대응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이 기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사례가 축적된 상담소 등에서 지원을 시작하되 피해의 특성에 맞게 별도 기관의 설치, 운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안성희**

1.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분리 검토 필요성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연인 간,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젠더폭력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연구 및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어려움이 있다. 발제문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제언하고 있으며 ‘스토킹 가해유형’으로 제시된 행위 중에는 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일견 데이트폭력으로 분류해 보아야 할 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또는 과거에 서로 연애 관계에 있었던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으로 규정된다.¹⁾ 한편 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로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다.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연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스토킹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데이트 폭력과 같은 범주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 범죄를 애정의 문제로 오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젠더폭력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규율 대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 토론문은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과 무관하며 토론자 개인의 의견임.

**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검사

1) 이화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 새로운 구성요건의 필요성

(1) 데이트 폭력

형사법에서 ‘폭력’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나 데이트 폭력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행위 유형은 신체적, 성적 행위만이 아니라 통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 상해죄 등에, 통제는 체포죄, 감금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언어적인 부분은 모욕죄 등에, 경제적인 부분은 사기죄나 공갈죄 등 재산범죄의 영역으로 규율될 여지가 있는 행위이다. 성적 피해의 경우 당연히 성범죄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 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는 각각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절한 죄명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처리 방향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발제자가 소개한 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2) 스토킹

스토킹의 경우 기존의 형사법 규정으로 규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발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 발송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형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이르기 전의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낮은 경범죄처벌법 외에 달리 규율할 법률이 없어 이를 규율할 처벌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발제자가 소개한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역시 기존 형사 처벌 규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제시할 것인지는 발제자의 제언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개념으로 구성할 경우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나, 오히려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사 또는 재판의 담당자에 따라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게 될 여지가 있다. 또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독일 등의 입법례에 따라 구체적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처벌 대상을 한정한다고 하여 보호대상을 그러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피해자로 한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 기술적으로 보호대상은 더 넓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모든 법률이 그러하지만 형사 처벌 규정의 경우 더더욱 일반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성폭력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기존의 난립되어 있는 특별법을 형법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처벌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만 규율하되 이를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형법에서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만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각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도 고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과 통합하여 규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우에도 스토킹의 경우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기대하는 사례도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의 보호처분 제도를 활용하거나 준용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격리를 통한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의 처벌과 더불어 병적인 망상이나 집착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지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보호관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호 및 구조 등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4. 기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현재 검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의 경우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다루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강력 사건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다.

발제자는 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인적사항 보호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비면식법에 의한 범죄 또는 제3자가 신고 또는 증언한 경우에 더 필요한 제도이다. 위 법은 범행 입증을 위하여 진술해 준 참고인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이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는 것보다 현재 소재지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누설을 막기 위해서 범죄신고자보호법의 준용 필요성은 높지 아니하다. 이는 현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등이 가해자나 그 변호인 또는 제3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마치며

젠더폭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행위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상이한 점이 많아 함께 논의되거나 규율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기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활용하되 포섭되지 않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별도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체계는 통합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찰의 데이트폭력·스토킹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

이용욱*

1. 들어가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새로운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언론지면을 장식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역시 수면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의 처벌건수를 비롯해 많은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 법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성폭력 중 상대적으로 유사한 가정폭력의 경우 일찍이 관련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한 반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다.

〈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의 비교 〉

- **(가정폭력)** △ **적용 대상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관련법 체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적용
 -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동법 제2조) 및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동법 제5조)
- **(데이트폭력)** △ **적용 대상자** :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관련법 체계** :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X
 - 행위 유형별(살인·성폭행·폭행 등) 형법 등 적용 / 임시조치 X
- **(스 토 킹)** △ **적용 대상자** : 대상자 간 관계 제한 X, 不知의 관계에서도 적용
 - △ **관련법 체계** : 특례법 등 통합법은 없으나 「경범죄 처벌법」 상 처벌규정
 - 경범죄처벌법(3조① 지속적 괴롭힘) 또는 행위 유형별 형법 등 적용 / 임시조치 X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여기에서는 경찰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와 애로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련법 제정관련 방향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경찰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 현황 및 문제점

1. 대응 현황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를 편성(전국 252개팀 3,709명)하고 관련 기능인 형사, 여청, 청문 등이 합동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초동조치 강화 및 엄정대응을 위해 112신고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고 이전 신고이력을 관리하여 신고출동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가피해자 분리 후 가해자 대상 서면경고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험성과 죄질 등을 고려 구속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및 지원제도 등 서면안내 후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호조치¹⁾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7.24부터 8.31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²⁾하여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 유도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13. 3월)에 따라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한 범죄가 형사법 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별법³⁾에 따라 적용·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순 통고처분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거나 그러한 행위가 더 심해질 경우 관련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거나 신변보호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112신고시스템 상 코드부여 및 피해자 안내서, 가해자 경고장 등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제반 조치들도 추가 활용하는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2) 기간 중 신고접수 총 1,621건, 입건 1,105명(평시 대비 신고 70%↑, 검거 30%↑)

3) 형법(폭력, 협박, 주거침입 등), 정보통신망법,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성폭력특별법 등

2. 대응 과정 상 문제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변보호조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변보호조치의 경우도 보호시설 연계(피해자 동의 時)나 실시간 신변경호 수준이 아닌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수단 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시 현장의 경찰이 고소란히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애로가 있다.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만으로는 처벌이 미약해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형사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많아 현장에서의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폭력, 상해로까지 발전하기 전 단계의 상황이 많아 이에 대한 제지나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을 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기 쉽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느껴져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데이트폭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보호방법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Ⅲ.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법 제정 방향

현재 20대 국회에만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제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각각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 스토킹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데이트 폭력 부분은 「가정폭력 특례법」과 특성(특별한 관계 내의 형사범)이 유사한 만큼 동법의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스토킹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데이트폭력 부분을 같이 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쟁점은 스토킹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과연 데이트폭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점이 되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 특례법」의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첫 번째 방안이다. 다만, 「가정폭력 특례법」의 취지가 가정(관계)의 보호에 중점이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 데이트폭력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보호사건 등의 관계 보호 취지의 규정은 배제하고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만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두 번째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하나의 법에 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의 적절한 합의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이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복성이 높고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접근금지명령 등의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경우 관련 법에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적극 활용중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시 이러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가정폭력 특례법」 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위반시 처벌조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어 현행법 체포 등 즉시적인 제재가 가능하나,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위반시 처벌조항이 과태료 (3백만원)5백만원에 불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거나 임시조치 5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가정의 경우 수차례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이나 보호조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특례법」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처벌조항을 피해자 보호명령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현행법 체포가 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관련법 제정 시에도 이러한 처벌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아동학대 특례법」의 경우 임시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청구시 검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체계를 개선하여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적인 단계가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적 처분으로 범죄예방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다른 형사소추 단계를 준용하듯이 검사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호조치가 내려지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도 피해자가 검사 경유 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것을 감안하면 (긴급)임시조치도 검사 경유 단계를 생략하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신속한 법원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심지어는 전화로 청구하거나 일정기간 경찰의 결정으로도 접근금지가 가능한 국가도 있는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표창원 의원 발의안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빠른 법원 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빠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으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관련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 그 어느 때보다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제에 단순 법제화를 넘어 「가정폭력·아동학대 특례법」 등 유사한 법제를 운영해 오면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반영되어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법제화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MEMO

Lined area for taking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MEMO

Lined area for taking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제4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 발행일 | 2017년 9월

| 발행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우 04505)

TEL : 02) 735-1050 / FAX : 02) 735-2051

<http://www.stop.or.kr>

| 인쇄처 | (주)선우정보인쇄

TEL : 02)2272-6105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